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 세부안

2017-08-10 의제TF 제출

2017-08-22 3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및 의결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득표와 실제 의석 간 불일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행 선거제도는 불공정하고 대표성이 떨어져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득표한 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권역을 나누어 권역별로 선출할 것인지 쟁점사항임. 비례대표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 정당은 과다 대표되고 소수 정당은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비례성 확보를 위해 단일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정당 독점체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부 정치권과 선관위도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다만 권역별 비례제의 전제 조건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으로 제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석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재와 같이 4-50석인 상황에서 6개 권역으로 분할할 경우, 하나의 권역에 배정된 비례 의석이 극히 적어 비례성 확보가 어려움.
- 비례대표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공천 개혁 방안임. 그동안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상당 부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었음. 이에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당이 마련하여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함.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 한 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보편적 규칙은 없으며 각 국가마다 역사와 제도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절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우리는 국회의원 1명이 인구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제헌 국회 때 의원 1명 당 인구 10만 명이던 것과 비교하여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대의제에서 의원 1인이 대변해야 할 국민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국민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민의를 촘촘히 반영하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기 어려움. 독일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1명 당 13만 5천여 명, 프랑스는 11만 5천여 명,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의원 1명이 8만 5천여 명을 대표하고 있음. 의석수 확대는 국회의 입법 기능 강화, 비대해진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역할을 위해서도 필요함. 점차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의 양과 예산 등 행정부의 규모는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국회의 규모도 증가하여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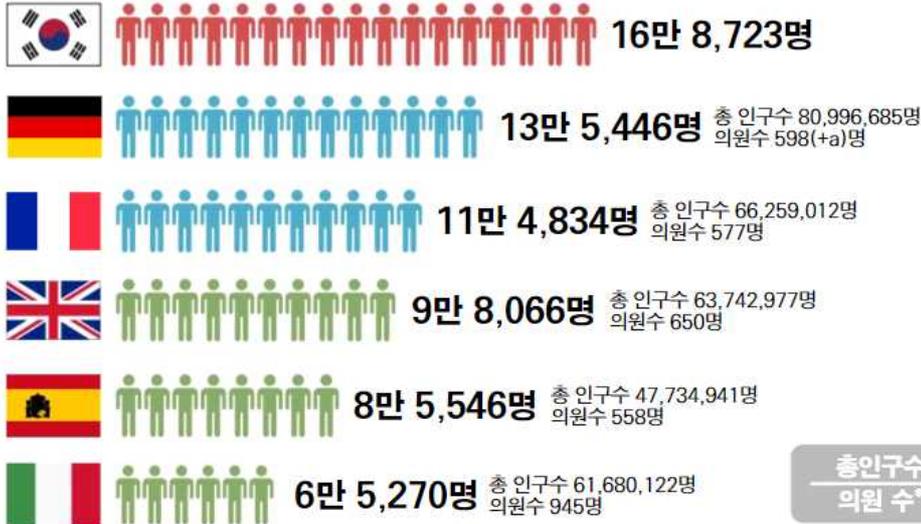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의석수 확대가 요구됨.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크게 축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석수 확대 없이는 비례대표 의석을 유의미하게 늘리기 어려움. 집단으로서 국회 규모가 증가하면 개별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어들 수 있고 새로운 정치인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됨.

<국회의원 의석 당 인구수 비교>

	총 인구수(명)*	의석수	의석 1석 당 대표하는 인구수(명)
제헌 국회(1948)	20,188,641	200	100,943
13대 국회(1988)	42,031,247	299	140,573
19대 국회(2012)	50,199,853	300	167,332
20대 국회(2016)	51,446,201	300	171,487

*통계청 자료

2014년, OECD 국가 국회의원 총수 /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 2014년 기준 (CIA WORLD FACTBOOK)

**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수 (IPU PARLINE DATABASE) 독일, 영국, 프랑스 하원만 직접 선출, 스페인과 이태리 하원과 상원 일부 직접선출

- 의석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과 반대 여론을 줄이기 위해 총 예산은 증액 없이 유지함. 그 밖에 특수활동비 폐지, 세비 동결, 개별 국회의원의 보좌진 수를 줄이고 정당 내 의정지원 보좌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국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국민적 불신을 받아온 것에서 비롯되었음. 따라서 국회는 국회 쇄신, 국회 개혁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임.

-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처우를 정하는 것을 타파해야 함. 국회의원의 보수나 특권 등을 다루는 외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이상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함.

-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의석 비례성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높여야 함. 이를 위해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1 비율로 하여 비례성을 확대함.
-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2인 선거구에서 거대정당의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을 개편방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1안과 2안을 제시함. 1안과 2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함.
 - 1안)은 지역구 없는 전면 비례대표제임. 기초의회의 의석규모가 적은 지역이 많으므로, 연동형 비례제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가 갖는 장점이 있음. 이와 함께 공천 과정의 개선안으로 여성 할당을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방식을 함께 제시함.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에서 선호하는 후보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당선자 결정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임. 이와 같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정당이 허용되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2안)은 지역구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2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여 3인 이상 실질적인 중선거구제로 함.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은 2:1로 규정함. 이 경우, 최소 의회 의석의 규모는 현행 7석이 아닌 9석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중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비례 정수(예시)>

기초의원 정수	지역구 정수	비례대표 정수
9석인 경우	6인(3인선거구 2개)	3
10석인 경우	6(3인선거구 2개)	4
11석인 경우	7(3인선거구 1개, 4인선거구 1개)	4
12석인 경우	8(4인선거구 2개)	4
13석인 경우	8(4인선거구 2개)	5
14석인 경우	9(3인선거구 3개)	5
15석인 경우	10(3인선거구 2개, 4인선거구1개)	5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 유권자 과반 미만의 득표로도 당선되는 현재의 상대다수제하에서는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실시함.
-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최고 권력자로서 더 많은 국민들, 과반 이상의 국민들 지지로 당선이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겠음. 또한 현행 지방선거에서는 불과 2,30%대의 득표율로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 한국의 정당법은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의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소재에 두도록 하고,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로우며 법률에서 정당의 당원숫자를 특정 숫자 이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찾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법이 아예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을 설립할 때에 특정한 당원 숫자를 요구하지 않음. 또한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와 인구가 적은 제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임.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는 것에 그쳐야 함. 따라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중앙당 수도 규정을 삭제하고 1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독점적인 거대기득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 및 지역사회 나름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불가능함. 중앙당 중심의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편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체를 충실하게 다루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구조와 정치활동의 문화가 절실함.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local party)들이 활동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여러 지역정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유권자단체(선거인단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만든 정치결사체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정치의 자율성과 정치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국정당만이 아니라 지역정당도 후보명부를 낼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참고 : 해외의 지방선거 사례>

생태·환경도시로 유명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3개에 달하는 전국정당과 지역유권자단체들이 시의회에 진출하고 있음.

<표>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구성

이름	의석
녹색당	11
기독교민주당	9
사회민주당	8
좌파/연대	
자유 유권자	3
살기 좋은 프라이부르크	3
자유민주당	2
문화 리스트	2
청년 프라이부르크	2
녹색대안 프라이부르크	1
독립 여성	1
더 파티	1
프라이부르크를 위한 기독교인들	1
합계	48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당선자 결정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등을 추진해야 함.

- 비례대표 여성 순번제와 여성 할당제도가 일부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매우 적음. 20대 국회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1명, 17%에 불과한 수준임.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117위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 조치도 함께 두어 제도적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 공천제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공천에서 여성할당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선자 결정에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대만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4개의 의석 중 1개는 반드시 여성이 당선되도록 할당하고 있음). 선거권자 1명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도 증액해야 함.

<표>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 국의 순위 (2017년 7월 기준)

	순위	총 의석수	여성의원 비율(%)
스웨덴	6	349	43.6
핀란드	9	200	42.0
노르웨이	12	169	39.6
독일	23	630	37.0
영국	48	650	32.0
미국	100	433	19.4
대한민국	106	300	17.0
일본	164	475	9.3

출처 : IPU (www.ipu.org)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 현행 기호배정 방식은 특정기호에 대한 ‘묻지마식 줄투표’ 현상 뿐 아니라 선(先)순위를 배정받게 되는 중앙정당과 ‘가나다’순 성명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일률적 정당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비록 비례대표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후보자 1명마다 1천 5백만원 기탁금을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고보조나 당비 지원을 받기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고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음. 전반적인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춰 신진 정치인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반환 기준도 하향 조정함. 득표율 10% 이상 전액 반환, 10%~5% 득표율은 75% 반환, 5% 미만은 반액 반환 하도록 함. 선거비용 보전 기준 역시 득표율 10% 이상은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5% 득표율은 75% 보전, 5% 미만은 반액 보전 받도록 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 선거권은 참정권의 핵심이며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함.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만18세 선거권 연령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며 오스트리아, 독일의 일부 주, 스코틀랜드 등이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춘 것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도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 나가야 함.

○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세, 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은 1947년, 1952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유지되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음. 전체 유권자 중 20대 유권자는 15.9%이지만, 의회 대표성 즉 20대 국회의원은 0.3%, 단 1명에 불과한 것도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년)	
		출마인원(1,092명)	당선인원(300명)
20대	676만 3939명(15.9%)	26명(2.4%)	1명(0.3%)
30대	747만 37명(17.6%)	61명(5.6%)	2명(0.7%)
40대	872만6599명(20.6%)	233명(21.3%)	50명(16.7%)
50대	846만7132명(19.9%)	524명(48.0%)	161명(53.7%)
60대 이상	1034만2391명(24.4%)	248명(22.7%)	86명(23.7%)

○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도 개정해야 함. 현행 정당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함. 국가인권위도 2012년,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함.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도 삭제하여 선거 시기 다양한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선거의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후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93조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뿐만 아니라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독소조항을 시급하게 폐지해야 함.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후보자 검증을 크게 제약하고 손피켓, 유인물, 현수막,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한 규정도 유권자의 정책 호소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 관련 독소조항을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국선언 등 정책 활동에서 법적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함. 교사, 공무원의 당원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함.
-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함.

※ 참고. 이재정 의원 등 30인 발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 정당법 :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당원 가입 연령은 정당이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65조1항) 삭제하고, 선거운동은 '그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금지함. 66조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 정치자금법 : 후원회의 회원 규정을 개정하여 가능하도록 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 투표할 권리는 참정권의 핵심이지만, 투표하고 싶어도 생업으로 인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다수 존재함. 2012년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운영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접수 405건을 볼 때,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원거리 출퇴근 등의 제약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됨.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권에서 배제된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이도록 함. 또한 현재 선거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 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휴무일로 정하기도 하나, 다수의 노동자가 선거 당일 출근해야 함. 선거 당일을 법정 유급 휴일화 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함.

-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함.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소가 2층이나 3층, 지하에 설치됐으나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전국 투표소 중 18.3%에 달함(2017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등 장애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